■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22. 6. 7.>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7제8항 관련)

1. 공통 자격

가. KS Q ISO/IEC 17025에 따라 시험업무 처리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나. 골재 품질관리 업무를 사업 목적으로 포함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시설 기준

- 총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골재 관련 전용 시험실 및 사무실 등으로 구분·구획되어 있어야 하며 시약 시험을 위한 자동환기시설 및 시약 보관시설이 구획되어 있을 것
- 각각의 골재시험 종류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나. 장비 기준: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구분	시험 기구 및 장비	수량
절대건조밀도	저울, 플라스크, 원뿔형 몰드, 다짐봉, 건조기, 철망바구니 등 KS F 2504(모래) 및 KS F 2503(자갈)에 따라 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 기구 및 장비	1식(set) 이상
흡수율	저울, 플라스크, 원뿔형 몰드, 다짐봉, 건조기 등 KS F 2504(모래) 및 KS F 2503(자갈)에 따라 흡수율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구 및 장비	1식(set) 이상
안정성	표준체, 철망바구니, 용액 침지 용기, 건조기 등 KS F 2507에 따라 용액반응에 의한 골재 손실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 기구 및 장비	1식(set) 이상
점토덩어리	저울, 표준체 등 KS F 2512에 따라 점토덩어리를 분리하고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구 및 장비	1식(set) 이상
0.08mm체 통과율	저울, 표준체, 골재 침지 용기 등 KS F 2511에 따라 0.08mm체를 통과하는 잔입자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 기구 및 장비	1식(set) 이상
입자모양 판정실적률	KS F 2507에 따라 골재의 질량 및 건조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 기구 및 장비	1식(set) 이상
마모율	표준체, 로스앤젤레스 마모시험기 등 KS F 2508에 따라 골재의 마모율과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	1식(set) 이상

	기구 및 장비	
염화물 함유량	비커, 피펫, 데시게이터, 플라스크 등 KS F 2515 또는 KS F 4009에 따라 골재의 염화물 함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구 및 장비	1식(set) 이상
체가름 (조립률)	표준체 등 KS F 2502에 따라 조립률 및 질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시험기구 및 장비	1식(set) 이상
편장석률	표준체, 편장석 판별용 측정자 등 KS F 2575에 따라 편장석률 및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구 및 장비	1식(set) 이상
파쇄면 비율	표준체 등 KS F 2357 부속서 A에 따라 파쇄면 비율 및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구 및 장비	1식(set) 이상
모래당량	모래당량 시험장치, 진동 교반기시험기 또는 수동진동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시험장치 등 KS F 2340에 따라 모래당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구 및 장비	1식(set) 이상
잔골재공극률	소형 실린더, 깔때기, 스패뉼라 등 KS F 2384에 따라 잔골재공극률 및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구 및 장비	1식(set) 이상

3. 기술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기술인력	해당 분야	
	전공 분야	자격 분야
가.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목, 토목시공, 토목재료, 건축, 건축시공, 건축재료 지질, 자원 관련분야	토목품질시험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나. 기사 1명 이상		
다. 산업기사 1명 또는 기능사 1명이상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토목공학, 건축공학, 재료공학, 자원공학, 토양환경, 지질학, 이공계열 관련 학과	
마. 골재 분야 KS인증 심사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건설(F) 분야 KS인증 심사원	

비고

1. 시설 및 장비

가.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측정장비는 중복 사용할 수 있다.

나. 시험에 사용되는 장비는 측정 소급성 및 교정관리 절차에 따라 필요 시 교정 검사를 해야 한다.

2. 기술인력

가. 기술인력은 해당 기관의 골재 품질 관련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며, 다른 골재 품질 관련기관 등의 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술사는 해당 자격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콘크리트 및 골재 품질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한 후 콘크리트 및 골재 품질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골재 품질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바.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